



제 432회 국회 (임시회)
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<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 >
■ 조계원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4813호)

2026. 2.
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전문위원 김용규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 ..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: 조계원의원 등 10인
2. 발 의 일: 2025. 12. 3.
3. 회 부 일: 2025. 12. 4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체육인이 국가 체육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징계 등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선수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

가. 개정안 요지

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 신설).

나.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4조의2(체육인의 시책 마련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제4조에 따른 국가 체육 발전 등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하게 존중받고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체육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
다. 검토사항

「체육인 복지법」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¹⁾.

이에 따라 「체육인 복지법」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제4조에서 규정²⁾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개정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인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다만, 「체육인 복지법」 제5조³⁾에서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한 조항이 이미 존재함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, 기존 책무 조항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보임.

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「체육인 복지법」상 이미 규정된 체육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에 공감한다는

1) 「체육인 복지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) 「체육인 복지법」

제4조(체육인의 지위와 권리) ① 체육인은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.

② 모든 체육인은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, 체육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,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.

③ 모든 체육인은 유형·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.

3) 「체육인 복지법」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377